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·수입 통관목록 자료와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세원(稅源)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25. ~ 2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
공사

별표 제2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| |
|---|
| 가.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
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
신고에 관한 자료 |
| 나. 「관세법」 제254조의2
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
송업자가 같은 법 제241
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
게 제출하는 수출·수입
통관목록 자료 |
| 다. 「관세법」 제257조에
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
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
출 관련 우편물목록 자료 |

별표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8	한국자산관리공사	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 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	국세청	매년 3월 31일
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	실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	
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별표 제21호 및 제128호의 개정
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
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)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 제4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<u>18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222